무배당 AAA교통상해보험 약관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
2. 보험가입금액(구좌수)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이하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라 합니다)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5 조의 2 (피보험자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후 피보험자는 변경전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변경후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변경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⑤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변경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2조(청약의 철회),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6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7 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4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

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의2 (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제 11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2 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하며, “휴일”, “평일”의 판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별표3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

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7.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제 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각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지급되는 장해급여금으로 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7 조 (해약환급금)

이 계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8 조 (배당금)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9 조 (소멸시효)

보험금 또는 급여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0 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2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3 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4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5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2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7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28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9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8조(보험금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또는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0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분쟁조정 등

제 31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3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5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6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37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8 조 (특약 부가의 특칙)

이 계약에 '무배당 의료비특약', '무배당 암특약', '무배당 3대질병보장특약' 또는 '무배당 3대특정암보장특약'을 부가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특칙을 적용합니다.

1. 제7조(계약의 소멸) 제2항 및 제5조의2(피보험자의 변경)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위의 해당 부가 특약은 소멸되고,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당시의 해당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이 계약의 갱신시, 위의 부가 특약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 보험료로 합니다.

제 39 조 (계약의 갱신)

① 이 계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5 년간 갱신됩니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해당 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 일 전까지 해당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서면 통지를 한 때
2.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가입연령을 초과하는 때

③ 이 보험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갱신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이미 납입한 갱신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갱신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계약은 연장된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그 이자를 반환한 경우 그 때로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⑤ 갱신된 계약의 보험계약일은 갱신 후 제1회 보험료의 납입기일로 합니다.
⑥ 제7조(계약의 소멸),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및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의 규정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의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순수보장형)

(보험가입금액 10구좌 기준)

보험금 또는 급여금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비 고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4,000만원	지급후 계약 종료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2호)	보험기간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지급후 계약 종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지급후 계약 종료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3조 제4호)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급 4,000만원 제2급 2,800만원 제3급 2,000만원 제4급 1,200만원 제5급 600만원 제6급 400만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경우 지급후 계약 종료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3조 제5호)	보험기간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급 2,000만원 제2급 1,400만원 제3급 1,000만원 제4급 600만원 제5급 300만원 제6급 200만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경우 지급후 계약 종료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3조 제6호)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급 1,000만원 제2급 700만원 제3급 500만원 제4급 300만원 제5급 150만원 제6급 100만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경우 지급후 계약 종료
보험료 납입면제 (약관 제13조 제7호)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별표 2) 재해분류표

(이 보험의 만기환급형 [별표2] "재해분류표"와 같음.)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이 보험의 만기환급형 [별표3] "교통재해분류표"와 같음.)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이 보험의 만기환급형 [별표4]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음.)

장해등급분류 해설

(주계약의 "장해등급분류 해설"과 같음.)